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2. 28.(목) 06:00, (지면) 2023. 12. 28.(목) 석간 배포 2023. 12. 27.(수) 14:00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위해 앞으로 5년간 연근해어선 2,024척 감척한다

-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 확정·공고
- 근해업종 순수익률 19.9%→34%, 수산물 자급률 71%→79% 개선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하여 12월 28일(목) 공고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4년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특히, 순수익률이 낮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집중 감척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업효율화를 통한 근해업종의 순수익률을 개선(19.9%→34%)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어구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거하는 등 어구 조사·관찰(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운반선 관리, 불법어업 제재 등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연계 추진하여 감척 사업을 통한 자원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감척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감척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문관리기관을 통해 감척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예비후보자에 대해 감정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여, 감척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하여 절차 신속화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됨과 동시에, 연근해어업 생산량 증가를 통한 수산물 자급률 개선(현행 71% -> 79%)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510)
		담당자	사무관	최정원 (044-200-55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추진 전략

비전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과 어업경쟁력 제고

목표

수산자원량 503만톤, 수산물 자급률 79% 이상,
감척지원금 개편으로 어업인 수용성 제고
- 불법어업 제재 · 어구 유통관리 강화로 감척 효율성 제고 -

기본방향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감척목표 설정	[1] 자원상황을 고려한 적정어선 규모 [2] 근해어선 집중감척 추진 [3] 국내 수산물 수급 유지
2. 연관 정책 연계 강화	[1]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 [2] 어획물 운반선 규모 관리 [3] 불법어업 제재 강화
3. 감척 사업 관리 내실화	[1] 행정관리 강화 [2] ESG 요소를 고려한 감척 관리 [3] 자원변화를 고려한 감척 조정

최적 감척목표 설정 및 연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어업선진화 이행 통해 구조개선의 효과성을 제고

[1] 어업규제 혁신

[2] 시장친화형 어업관리기반 구축

참고 2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요약**

Ⅰ. 추진배경

○ (**목적**)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연근해어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감척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4~'28)**"을 수립**

* 제1차 기본계획('14년~'18년), 제2차 기본계획('19년~'23년) 수립

Ⅱ. 감척 사업 평가

○ (**실적**) ▲지난 28년간('94~'23) 2조671억원 투입, 21,228척 감척 ▲'제2차 기본계획('19~'23)'에 따라 **1,185척 감척**(근해 283척, 연안 902척)

○ (**평가**) 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연평균 근해어선 감척 수량은 1차 기본계획 기간 대비 433% 증가(연평균 4척 → 연평균 39척)

- (**지원확대**) 평년수익액의 80% 수준으로 지급되던 **폐업지원금**을 **확대**('21년 90%, '22년 100%)하여 감척 대상 **어업인의 수용성 제고**

- 다만, 수온 상승(40년간 1.1℃), 어장 축소 및 특히, **과다 어구 사용**(자망, 통발* 등)은 **감척 효과 상쇄** → 자원량 및 경영여건 개선 미흡

○ (**현황**) ▲어획량·자원량 대비 **여전히 어선 세력 과다**(일본의 4.5배, 노르웨이의 6배), ▲어업생산성 감소 등으로 **감척 희망 어업인 증가**

Ⅲ. 「제3차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감척 목표) 어획강도가 높고, 순수익률이 낮은 근해어선 집중감척

○ (**자원평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량 유지를 위해 **목표 자원량**(503만톤*) 달성 필요

* 목표자원량(503만톤) 달성 시 최대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량은 매년 약 131만톤 추정(수과원)

○ (**감척목표**) ▲어획강도, ▲자원량 회복, ▲경영여건* 개선, ▲수산물 자급률 목표(79%) 등을 고려, **근해 524척, 연안 1500척 감척**

* 순수익률: 근해어업 현 19.9% → 개선 34%, 연안어업 현 48.1% 유지

<최종 감척 목표 및 잔여 어선 수>

구분	現 어선규모	감척목표	2차 계획 대비	잔여 어선 수
합계	37,238	**2,024**	**55.7% 증가**	35,214척
근해	2,385	**524**	**74.7% 증가**	1,861척
연안	34,853	**1500**	**50% 증가**	33,353척

○ (**제도개선**) 어업인 감척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폐업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

2 (관련정책 연계) 불법어업 제재 강화·어구유통관리로 감척 효과성 증대

○ (**문제점**) ①**외부요인**(불법어업, 불법어구, 운반선) 등에 기인한 **과잉어획**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후관리** 미흡, ②**감척** 통합관리 **전문기관 부재**

○ (**주요 개선방향**) ①**면세유 공급 제한** 등 **실효적 불법어업 제재** 강화, ②**어구 생산·유통**, ③**어획물 운반선 규모 관리** 등 관련 정책수단과 연계

3 (관리 내실화) 행정절차 효율화와 사회적 고려를 통한 수용성 제고

○ (**절차개선**) 감척 대상자 **조기 선정과 예비후보자**(대상자의 50%) **사전감정평가제도*** 등을 통해 집행 관리 내실화

* 예비후보자에 대해 감정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여, 감척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하여 절차 신속화

○ (**사회적 고려**)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여 **노후어선**(탄소 배출), 자망·통발 등 **부설형 어업** 우선 감척 추진

- **외부요인**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업종의 감척수요를 우선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